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98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편에 따른 종량제봉투 수수료 징수방법 규정, 대형폐기물 항목 세분화,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과도한 절차 규정 삭제, 단독세대 및 노인가구를 위한 1ℓ 음식물 종량제봉투 신설 등 주민의 요구와 청소체계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종량제봉투 수수료 징수방법 규정(안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사문화된 조문 삭제(안 제22조제4항)
- 나. 영업장 배출 연탄재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 다. 단독세대 및 노인가구 등을 위한 1ℓ 음식물 종량제봉투 신설(안 제13조제2항, 별표3)
- 라. 대형폐기물 항목 세분화(안 제2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취소 절차 간소화(안 제26조의2)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 범위 조정(안 제28조)
- 바.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 제30조제1항) 및 불필요 조항 삭제(안 제30조제2항)
- 사. 무단투기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등 과도한 절차 규정 삭제(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820-1376, FAX : 820-9979, E-mail : mbjung@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의 다음 각 목의”를 “외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조 제3호 중 “사업장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을 “사업장폐기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재활용가능 자원”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전지역”을 “전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9조제2항”으로,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를 “수립”으로 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한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을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구청장”으로, “관급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을 “ 관급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 또는 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요일)·시간·장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를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방법)”으로 하고, 제7조의2제1항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각각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시간,”를 “일(요일)·시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관시설”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음식물 등 물기가 있는 폐기물은 완전히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시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을 ”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8조”를 “제8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가정용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종량제봉투”를 “일반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6호”로 하고 “폐기물”을 “폐기물과 폐목재류, 폐유리, 폐도자기류 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대행업자”로, “가정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를 “가정용종량제봉투”로, “(이하“봉투판매소”라 한다)”를 (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대행업자”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폐기물처리업체”를 “폐기물처리대행업체”로 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관내 소속 폐기물처리업체”를 “구청장 및 폐기물처리대행업자”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 ① 구청장은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폐기물처리대행업자를 통해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대행업자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을 징수한 경우 구청장은 징수 금액을 수시분으로 고지·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를 “포함하고, 그 범위내에서 부담토록 하며, 그 이외에는 구에서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 “(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을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으로 하고, 제26조제1항 본문 중 “배출신고와 동시에 구수입 증지(인증기 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를

“배출신고시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단서의 “다만, 대형구역의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수료를”을 “폐기물처리 대형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업자가 부담하는 반입수수료의”를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금액은 매월 고지·수납하고,”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변경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27조 중 “제25조제3항”을 “제26조”로, “반입수수료”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제28조제2항 본문 중 “지급하되”를 “지급하고”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과태료 및 주민신고포상금”으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중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중별과 정도”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의 위반행위”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앞의 “제6장 폐기물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금제”를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신고대상)”을 “(주민신고대상)”으로 하고, 제36조 제1항 중 “제8조제1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의 제목 “(포상금 지급)”을 “(주민신고포상금 지급)”으로 하고, 제39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 중 “2.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1 ℓ	2 ℓ	3 ℓ	5 ℓ	10 ℓ	120 ℓ (공동주택용 납부필증)	kg
종량제 수수료	100원	190원	300원	500원	1,000원	12,000원	130원

별표5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분 류	품 목	규 격	가 격	변경사항	비고	
가구류	거울	0.5㎡당	1,000			
	문갑		3,000			
	문짝		2,000			
	병풍		2,000			
	서랍장	5단이상		4,000		
		5단미만		2,000		
	소파응접세트	1인용		2,000		
		2인용		4,000		신규
		3인용		6,000	가격변경	변경
		4인용		8,000	규격추가	신규
	의자	식당,가정용		1,000		
	식탁	6인 이상		4,000		
		4인 이상		3,000		
		4인 미만		2,000		
	대리석식탁	4인 이상		7,000	항목추가	신규
		4인 미만		5,000	항목추가	신규
	신발장	높이 1M이상		3,000	규격추가	신규
		높이 1M미만		2,000	규격추가	
	아기옷장	50CM 이상 1쪽		6,000	규격추가	신규
		50CM 미만 1쪽		3,000	규격추가	
	오디오 받침대(다이)			2,000		신규
	옷걸이(목재)	1M 미만		1,000	규격추가	
	유아용 침대			3,000		
	장롱	90CM이상(1쪽당)		15,000	기준추가	
		90CM미만(1쪽당)		10,000	기준추가	
	장식장	90CM미만		4,000	규격추가	
		90CM이상		6,000	규격추가	신규
	접이식 침대	싱글		5,000	규격추가	신규
		더블		7,000	규격추가	신규
	차탁자	티 테이블		2,000		
창문			2,000			

분 류	품 목	규 격	가 격	변경사항	비고
가구류	책상	양수책상	7,000		
		편수책상	4,000		
		90X180cm 이상	10,000		
		90X180cm 미만	6,000		
	침대	1인용	10,000		
		1인용 매트	5,000		
		1인용(받침대)	5,000	항목추가	신규
		2인용	15,000		
		2인용매트	8,000		
		2인용(받침대)	7,000	항목추가	신규
	돌침대	2인용 이상	25,000	규격추가	신규
		1인용	20,000	규격추가	신규
	캐비닛		4,000		
	파일캐비닛	3단이하	2,000		
		4단이상	3,000		
	파티션	1칸당	2,000	항목추가	신규
	행거	일자형	1,000		
		회전식	3,000		
화장대		3,000			
생활가전	가스레인지	전 규격	면제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이상	4,000		
		높이 1M미만	면제		
	가습기		면제		
	공기청정기	높이1M미만	면제		
		높이1M이상	2,000		
	냉장고	500L이상	8,000		
		300L이상	6,000		
		300L미만	4,000		
	노트북		면제		
	녹즙(믹서)기		면제		
	다리미		면제		
	모뎀		면제		
보온밥통		면제			
비디오(DVD)		면제			

분 류	품 목	규 격	가 격	변경사항	비고
생활가전	석유난로		2,000		
	선풍기	가정용 외	5,000		
		가정용	면제		
	세탁기		3,000		
	스케너		면제		
	식기건조기		1,000		
	앰프		1,000		
	에어컨(실내기)	264m ² 이상	8,000		
		66m ² 이상	5,000		
		66m ² 미만	3,000		
	에어컨(실외기)		면제		
	오디오셋트	대형(높이1M이상)	5,000		
		소형(높이1M미만)	면제		
	재봉틀		3,000		
	전기난로		1,000		
	전기매트	2인용	5,000		신규
		1인용	3,000		신규
	전기밥솥		면제		
	전기장판		면제		
	전기히터		면제		
	전기 · 가스스토브		2,000		
	전자렌지		면제		
	전화기		면제		
	정수기		면제		
	조명기구		1,000		
	청소기		면제		
	카세트 라디오		면제		
	컴퓨터 본체		면제		
	컴퓨터 주변기기	복합기, 프린터, 키보드, 오락기 등	면제	품목통합	
	컴퓨터용 모니터		3,000		
	타자기		1,000		
토스터기		면제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			
	42인치미만	3,000			

분 류	품 목	규 격	가 격	변경사항	비고	
생활가전	팩시밀리		면제			
	헤어드라이기		면제			
스포츠레저	기타 등 악기	바이올린, 첼로 포함	1,000	항목추가	신규	
	러닝머신		6,000	항목추가	신규	
	안마의자		3,000	항목추가	신규	
	자전거	일반		3,000		
		아동용		2,000		
		실내용		3,000	항목추가	신규
피아노	일반		15,000			
	올겐(전자피아노포함)		4,000	규격추가		
욕실용품	고무통	대형(80X120cm이상)	4,000			
		중형(60X100cm이상)	3,000			
		소형(60X100cm미만)	2,000			
	변기	양변기	3,000			
		좌변기	2,000			
	세면대		3,000			
	욕조		8,000			
탈수기		면제				
유아,어린이용품	그네(실내용)		1,000			
	보행기		1,000			
	어린이 놀이기구	대형장난감류	1,000	규격추가		
	유모차	더블	3,000	규격추가	신규	
	유모차	싱글	2,000	규격추가		
	유아 안전시트	차량용	1,000	규격추가	신규	
	그 밖의 소형장난감	레고 등 조립식 완구류	1,000	규격추가	신규	
	장난감 미끄럼대		3,000		신규	
주방	밥상	6인용 이상	3,000			
	밥상	4인용 이상	2,000			
	밥상	4인용 미만	1,000			
	쌀통		3,000			
	싱크대	90CM 이상 1쪽	6,000			
	싱크대	90CM 미만 1쪽	4,000			
	항아리	소형	1,000	명칭변경 규격추가		
	항아리	대형	2,000	규격추가		

분 류	품 목	규 격	가 격	변경사항	비고
주방	홍삼제조기 원액추출기		2,000	항목추가	신규
	환풍기		1,000		
기타	가방	여행용(바퀴)	2,000		
	가방	일반	1,000		
	간판	40X100cm 이상	4,000		
	간판	40X100cm 미만	3,000		
	개집	고양이집 포함	2,000	항목추가	신규
	골프가방		1,000	규격추가	신규
	다리미판		1,000	항목추가	신규
	대자리(대발포함)		1,000	항목추가	
	대형액자		1,000		
	도마(목재)		1,000	항목추가	신규
	렌지후드		1,000		
	블라인드	폭 1M당	1,000	규격추가	
	비치파라솔		2,000	항목추가	신규
	빈 화분	30CM미만	1,000	항목추가	신규
	빈 화분	30CM이상	2,000	항목추가	신규
	빨래건조대		1,000		
	솜이불		2,000	항목추가	신규
	수족관	1M미만	3,000	규격추가	
	수족관	1M이상	5,000	규격추가	신규
	수족관(어항)	30CM미만	1,000	규격추가	신규
	전자시계		면제	명칭변경	
	시계	괘종시계	2,000	규격추가	신규
	시계	벽걸이용	1,000	규격추가	신규
	아이스박스		1,000		
	욕실장	50CM미만	1,000	항목추가	신규
	욕실장	50CM이상	2,000	항목추가	신규
	입간판		1,000		
	죽부인		1,000	항목추가	신규
	카펫트(거실매트)		4,000	항목추가	신규
	파라솔의자(개당)		1,000	항목추가	신규
	FRP물탱크	3,000 ℓ 이상~5,000 ℓ 미만	6,000		
	FRP물탱크	1,000 ℓ 이상~3,000 ℓ 미만	3,000		
TV안테나		1,000			
휠체어		2,000			

※ 단,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별표 2]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제7조의2 관련)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가.종이팩	0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행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압착하여 배출
나.유리병	0 음료수병,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0 농약병	- 물로 행군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다.금속캔	0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0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성수지류	0 플라스틱류 -PET(음료수병, 생수 병 등), PS(요구르트 병, 아이스크림 용기 등), PE(세제용기 등) 등의 용기·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0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 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전지류	0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나.타이어	0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다.운활유	0 운활유(운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마.형광등	0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깨지지 않게 주요거점(동주민센터, 아파트 등) 형광등 분리배출 수거함에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종이류 (고지류)	0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0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0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0 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고철류	0 고철(공구, 철사 못등) 0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다. 비닐류	0 필름류(과자봉지, 라면봉지 등) 0 일회용 비닐봉지	- 이물질이 묻지 않게 내용물을 비우고 날리지 않도록 투명봉지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다.의류 및 원단류	0 면의류 0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투명 봉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0 식물성 섬유(면 마 등) 0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0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0 기타 합성섬유류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라.전자제품	TV,냉장고,세탁기, 에어컨, 1m이상 가전제품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컴퓨터, 모니터, 프린 터, 전화기, 오디오, 다 리미, 선풍기, 청소기, 1m미만 가전제품 등	- 일반주택 : 재활용품 배출일에 문전 배출 - 공동주택 : 배출장소 또는 전용수거함에 배출

※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별표 3] <개정 2015.7.30>

종량제 수수료(제13조제2항 관련)

1. 일반·재사용 종량제봉투 가격

구 분	일 반		재 사 용
	가 정 용	사 업 장 용	
5ℓ	130원		
10ℓ	250원		250원
20ℓ	490원	800원	490원
30ℓ	740원		740원
50ℓ	1,250원	2,000원	
75ℓ	1,880원	3,000원	
100ℓ	2,500원	4,000원	

2.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구 분	1ℓ	2ℓ	3ℓ	5ℓ	10ℓ	120ℓ (공동주택용 납부필증)	kg
종량제 수수료	100원	190원	300원	500원	1,000원	12,000원	130원

3. 공사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

폐기물의 종류	부과 기준	봉투가격
건축폐재류, 폐유리류, 폐도자기류 등	50ℓ	5,100원/매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 수집·운반비+처리비(반입수수료)+제작비+판매이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u>외의 다음 각 목의 폐기물</u>을 말한다.</p> <p>가. "일반폐기물"이란 <u>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u>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p> <p>나. "음식물류폐기물"이란 <u>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u> 등을 말한다.</p> <p>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u>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u>을 말한다.</p> <p>3. "사업장폐기물"이란 <u>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_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u>을 제</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외의</u> ----- -----.</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3. "<u>사업장폐기물</u>"이란 ----- ----- ----- ----- ----- -----</p>

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 7. (생략)

8.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

-----.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 7. (현행과 같음)

8. "재활용가능 자원"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 전지역-----.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 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동작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

-----.

② ----- 법 제9조제2항-----
----- 수립-----

-----.

제5조(동작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

-----.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한 자

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7조의2(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 배

(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 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구청장-----
-----관급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 또는 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요일)·시간·장소에-----.

②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방법) ① 재활용가능자원-----

----- 일(요일)·시간· -

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담아서 분리 배출할 경우에 필요한 투명한 비닐봉지, 종이봉투,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 1.~ 3.(생략)
4. 그 밖의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 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

----- 재활용가능자원-----
-----.

② ----- 재활용가능자원-----
-----.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

----- 생활폐기물-----

-----.

- 1.~ 3.(현행과 같음)
4.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음식물 등 물기가 있는 폐기물은 완전히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시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 ② ----- 영 -----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 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같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18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3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재활용가능자원 -----

제11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8조 -----

제13조(종량제 실시) ① -----

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생략)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봉투·공사장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 및 공공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종량제봉투는 가정 및 사업장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② (생략)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제2조제5호에서 정한 폐기물을 담는다.

④ (생략)

제18조(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의 공급 및 구입등) ① 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종량제봉투 중 가정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지정한 판매소(이하"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 . ----- 가정용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

----- . ----- 일반종량제봉투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조제6호-----
----- 폐기물과 폐목재류, 폐유리, 폐도자기류 등-----.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의 공급 및 구입등) ① ----- 폐기물처리대행업자-----
- 가정용종량제봉투-----

-----(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

금의 수납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의 징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판매소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생략)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구청장이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비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공급한 후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④ 제19조제4항에 따라 판매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은 배출자가 배출신고와 동시에 구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인증기로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구역의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① (생략)

1. (생략)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제2조제6호 별표 1 중

금의 수납등) ① 구청장은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폐기물처리대행업자를 통해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대행업자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을 징수한 경우 구청장은 징수 금액을 수시분으로 고지·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④ 삭제

제23조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제2조제7호 -----

수수료가 면제되는 소형가전제품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4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①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시스템 운영에 따라 발생된 전자지불 대행 수수료는 구예산으로 대행업체에 보전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에 포함된 범위내에서 부담토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삭제>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포함하고, 그 범위내에서 부담토
록 하며, 그 이외에는 구에서 부담
한다.

<삭제>

록 하며, 그 이외에는 구에서 부담한다.

④ 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기준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르되 변동될 경우에는 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한다. 반입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제26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배출신고와 동시에 구수입증지(인증기 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구역의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부담하는 반입수수료의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26조의2(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삭 제>

제26조(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

----- 배출신고시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거나 폐기물처리대행업자에게 -----
-----.

②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금액은 매월 고지·수납하고, -----
-----.

제26조의2(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변경 또

지 제 11호서식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가산금 등) 제22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 및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종량제봉투 중 가정용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가구당 최대 120리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

는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27조(가산금 등) ----- 제26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 ~ 4. (현행과 같음)

② -----

----- 지급하고 -----

-----.

택용 납부필증의 사용량에 따른 수수료의 세대별 분담금액 중 감면대상 세대의 분담금액은 납부필증 판매대금에서 공제한다.

③ (생략)

제5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0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31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위반 확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

③ (현행과 같음)

제5장 과태료 및 주민신고포상금

제30조(과태료) ①-----
-----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의 위반행위-----
-----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삭제>

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부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견제출) ① 구청장이 법 제 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태료 부과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1조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3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 제>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 제>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구

<삭 제>

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

에 따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43조에 따라 집행을 위
탁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 수입으
로 한다.

제6장 폐기물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금제[본장신설 2000.5.4]

제36조(신고대상) ① 법 제8조제1조 및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을 위
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 외의
곳에 버리거나 매립(소각)시설 외
의 장소에 매립(소각)하는 행위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1. ~ 6. (생략)

제37조(신고자) 신고자는 무단투기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증거물 또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8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으
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무단투기행위를 신고
하는 경우에는 증거물 및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객관성있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무단투기 신고는 무단투기행위

<삭 제>

제36조(주민신고대상) ① 법 제8조제

1항 -----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분청
청소행정과, 동주민센터 또는 구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금 지급) 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
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및 종량제봉
투·납부필증 불법제작·유통·판
매사실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포상금 지급시기는 과태료 부
과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단투기행위 및
종량제봉투·납부필증 불법제작·
유통·판매사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은 시행규칙으
로 정한다.

[별표1]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가 방	일반	1,000
	여행용(바퀴)	2,000
가스레인지	전규격	면제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4,000
	높이1m미만	면제
가 슥 기		면제
간판(cm)	40X100이상	4,000
	40X100미만	3,000

제39조(주민신고포상금 지급) ① --

이 경우 신고인은 객관적이고 명
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
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는 시행규
칙으로 정한다.

[별표1]

분류	품목	규격	가격	변경사항	비고
가구류	거울	0.5㎡당	1,000		
	문갑		3,000		
	문짚		2,000		
	병풍		2,000		
	서랍장	5단이상	4,000		
		5단미만	2,000		
	소파응접세트	1인용	2,000		
		2인용	4,000		신규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거울(유리)	0.5㎡당	1,000
고 무 통	대형(80X120이상)	4,000
	중형(60X100이상)	3,000
	소형(60X100미만)	2,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2,000
	높이1m미만	면제
그네(실내용)		1,000
냉 장 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노트북컴퓨터		면제
녹즙(믹서)기		면제
다 리 미		면제
대 자 리		1,000
대형액자		1,000
랜지후드		1,000
모 델		면제
문 갑		3,000
문 짝		2,000
밥 상	6인용이상	3,000
	4인용이상	2,000
	4인용미만	1,000
변 기	양 변 기	3,000
	좌 변 기	2,000
병 품		2,000
보온밥통		면제
보 행 기		1,000
브라인드		1,000
비디오(DVD)		면제
빨래건조대		1,000
서 랫 장	5단이상	4,000
	5단미만	2,000
석유난로		2,000
선 풍 기	가정용이외	5,000
	가정용	면제
세 면 대		3,000
세 탁 기		3,000
수 족 관		3,000
스 케 너		면제
시 계		면제
식기건조기		1,000
식 탁	6인용이상	4,000
	4인용이상	3,000
	4인용미만	2,000
신 발 장		2,000
쌀 통		3,000
썰 크 대	90cm이상 1쪽	6,000
	90cm미만 1쪽	4,000
아기옷장		3,000
아이스박스		1,000
앰 프		1,000
어린이놀이기구		1,000
에 어 컨 (실 내 기)	264㎡이상	8,000
	66㎡이상	5,000
	66㎡미만	3,000
에어컨(실외기)		면제
오 디 오 세 트	대형(높이 1m이상)	5,000
	소형(높이 1m미만)	면제
옷걸이(목재)		1,000

분 류	품 목	규 격	가 격	변경사항	비고	
가구류		3인용	6,000	가격변경	변경	
		4인용	8,000	규격추가	신규	
	의자	식당,가정용	1,000			
	식탁	6인 이상	4,000			
		4인 이상	3,000			
		4인 미만	2,000			
		4인 이상	7,000	항목추가	신규	
	대리석식탁	4인 미만	5,000	항목추가	신규	
		높이 1M이상	3,000	규격추가	신규	
	신발장	높이 1M미만	2,000	규격추가	신규	
		50CM 이상 1쪽	6,000	규격추가	신규	
	아기옷장	50CM 미만 1쪽	3,000	규격추가	신규	
		오디오 받침 대(다이)		2,000		신규
	옷걸이(목재)	1M 미만	1,000	규격추가		
	유아용 침대		3,000			
	장롱	90CM이상(1쪽당)	15,000	기준추가		
		90CM미만(1쪽당)	10,000	기준추가		
	장식장	90CM미만	4,000	규격추가		
		90CM이상	6,000	규격추가	신규	
	접이식 침대	싱글	5,000	규격추가	신규	
		더블	7,000	규격추가	신규	
	차탁자	티 테이블	2,000			
	창문		2,000			
	가구류	책상	양수책상	7,000		
			편수책상	4,000		
			90X180cm 이상	10,000		
			90X180cm 미만	6,000		
		침대	1인용	10,000		
			1인용 매트	5,000		
			1인용(받침대)	5,000	항목추가	신규
2인용			15,000			
2인용매트			8,000			
2인용(받침대)			7,000	항목추가	신규	
돌침대		2인용 이상	25,000	규격추가	신규	
		1인용	20,000	규격추가	신규	
캐비닛			4,000			
파일캐비닛		3단이하	2,000			
		4단이상	3,000			
파티션		1칸당	2,000	항목추가	신규	
행거		일자형	1,000			
		회전식	3,000			
화장대			3,000			
생활가전		가스레인지	전 규격	면제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이상	4,000			
		높이 1M미만	면제			
	가습기		면제			
	공기청정기	높이1M미만	면제			
		높이1M이상	2,000			
	냉장고	500L이상	8,000			
		300L이상	6,000			
		300L미만	4,000			
	노트북		면제			
	녹즙(믹서)기		면제			
	다리미		면제			
모뎀		면제				
보온밥통		면제				
비디오(DVD)		면제				
생활가전	석유난로		2,000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응 기		1,000
욕 조		8,000
유 모 차		2,000
유아용침대		3,000
응접세트	장의자	5,000
	의자1개	2,000
의 자	식당가정용	1,000
입 간 판		1,000
자 전 거	아 동 용	2,000
장 능	90cm 이상	15,000
	90cm 미만	10,000
장 식 장		4,000
재 봉 틀		3,000
전가가스스토브		2,000
전기난로		1,000
전기밥솥		면제
전기장판		면제
전기히터		면제
전자렌지		면제
전 화 기		면제
정 수 기		면제
조명기구		1,000
차 탁 자	티테이블	2,000
창 문		2,000
책 상	양수책상	7,000
	편수책상	4,000
책 장	90X180cm이상	10,000
	90X180cm미만	6,000
침 대	1인용	10,000
	1인용매트	5,000
	2인용	15,000
	2인용매트	8,000
청 소 기		면제
카세트라디오		면제
캐 비 넷		4,000
자 전 거	성 인 용	3,000
컴퓨터모니터		3,000
컴퓨터복합기		면제
컴퓨터본체		면제
컴퓨터오락기		면제
컴퓨터키보드		면제
타 자 기		1,000
탈 수 기		면제
토스터기		면제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
	42인치미만	3,000
팩시밀리		면제
프린터기		면제
피아노	일 반	15,000
	올 겐	4,000
항 아 리		2,000
화일캐비넷	4단이상	3,000
	3단이하	2,000
화 장 대		3,000
환 풍 기		1,000
행 거	회 전 식	3,000
	일 자 형	1,000
휠 체 어		2,000
헤어드라이기		면제

분 류	품 목	규 격	가 격	변경사항	비고
	선풍기	가정용 외	5,000		
		가정용	면제		
	세탁기		3,000		
	스케너		면제		
	식기건조기		1,000		
	앰프		1,000		
	에어컨 (실내기)	264㎡이상	8,000		
		66㎡이상	5,000		
		66㎡미만	3,000		
	에어컨 (실외기)		면제		
	오디오셋트	대형(높이1M이상)	5,000		
		소형(높이1M미만)	면제		
	재봉틀		3,000		
	전기난로		1,000		
	전기매트	2인용	5,000		신규
		1인용	3,000		신규
	전기밥솥		면제		
	전기장판		면제		
	전기히터		면제		
	전기·가스스 토브		2,000		
	전자렌지		면제		
	전화기		면제		
	정수기		면제		
	조명기구		1,000		
	청소기		면제		
	카세트 라디 오		면제		
	컴퓨터 본체		면제		
	컴퓨터 주변 기기	복합기, 프린터, 키보드, 오락기 등	면제		품목통합
	컴퓨터용 모 니터		3,000		
	타자기		1,000		
토스터기		면제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			
	42인치미만	3,000			
생활가전	팩시밀리	면제			
	헤어드라이기	면제			
스포츠 레저	기타 등 악기	바이올린, 첼로 포함	1,000	항목추가	신규
		러닝머신	6,000	항목추가	신규
		안마의자	3,000	항목추가	신규
	자전거	일반	3,000		
		아동용	2,000		
		실내용	3,000	항목추가	신규
피아노	일반	15,000			
	올겐(전자피아노포함)	4,000	규격추가		
목실용품	고무통	대형(80X120cm이상)	4,000		
		중형(60X100cm이상)	3,000		
		소형(60X100cm미만)	2,000		
	변기	양변기	3,000		
		좌변기	2,000		
	세면대		3,000		
	욕조		8,000		
탈수기		면제			
유아·어린이 용품	그네(실내용)	1,000			
	보행기	1,000			
	어린이 놀이 기구	대형장난감류	1,000	규격추가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FRP 물탱크	3,000 ℓ 이상 5,000 ℓ 미만	6,000
	1,000 ℓ 이상 3,000 ℓ 미만	3,000
TV안테나		1,000

분 류	품 목	규 격	가 격	변경사항	비고
	유모차	더블	3,000	규격추가	신규
	유모차	싱글	2,000	규격추가	
	유아 안전시트	차량용	1,000	규격추가	신규
	그 밖의 소형장난감	레고 등 조립식 완구류	1,000	규격추가	신규
	장난감 미끄럼대		3,000		신규
주방	밥상	6인용 이상	3,000		
	밥상	4인용 이상	2,000		
	밥상	4인용 미만	1,000		
	쌀통		3,000		
	싱크대	90CM 이상 1쪽	6,000		
	싱크대	90CM 미만 1쪽	4,000		
	항아리	소형	1,000	명칭변경 규격추가	
주방	항아리	대형	2,000	규격추가	
	홍삼제조기 원액추출기		2,000	항목추가	신규
기타	환풍기		1,000		
	가방	여행용(바퀴)	2,000		
	가방	일반	1,000		
	간판	40X100cm 이상	4,000		
	간판	40X100cm 미만	3,000		
	개집	고양이집 포함	2,000	항목추가	신규
	골프가방		1,000	규격추가	신규
	다리미판		1,000	항목추가	신규
	대자리(대발포함)		1,000	항목추가	
	대형액자		1,000		
	도마(목재)		1,000	항목추가	신규
	렌지후드		1,000		
	블라인드	폭 1M당	1,000	규격추가	
	비치파라솔		2,000	항목추가	신규
	빈 화분	30CM미만	1,000	항목추가	신규
	빈 화분	30CM이상	2,000	항목추가	신규
	빨래건조대		1,000		
	솜이불		2,000	항목추가	신규
	수족관	1M미만	3,000	규격추가	
	수족관	1M이상	5,000	규격추가	신규
	수족관(어항)	30CM미만	1,000	규격추가	신규
	전자시계		면제	명칭변경	
	시계	괘종시계	2,000	규격추가	신규
	시계	벽걸이용	1,000	규격추가	신규
	아이스박스		1,000		
	욕실장	50CM미만	1,000	항목추가	신규
	욕실장	50CM이상	2,000	항목추가	신규
	입간판		1,000		
	죽부인		1,000	항목추가	신규
	카펫트(거실매트)		4,000	항목추가	신규
	파라솔의자(개당)		1,000	항목추가	신규
	FRP물탱크	3,000 ℓ 이상~5,000 ℓ 미만	6,000		
	FRP물탱크	1,000 ℓ 이상~3,000 ℓ 미만	3,000		
TV안테나		1,000			
휠체어		2,000			

[별표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7조의 2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 쇼핀백, 달력, 포장지 -종이집, 팩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그 밖의 골판지 상자 등)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비닐 포장지는 제외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봉지에 넣거나 한데 묶음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2.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그 밖의 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담배꽂초 등 이물질들을 넣지 말 것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류	-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농약병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담배꽂초 등 이물질들을 넣지 말 것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뚜껑을 분리,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지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	-PET병 -합성수지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페스티로폴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폐유 용기류는 제외(삭제)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2003-92호)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연차별 줄이기 또는 회수·재사용 의무가 부여된 안전인종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 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에게 직접배출
6. 비닐류	-필름류(과자봉지, 라면봉지 등) -일회용 비닐봉지	-내용물을 비우고 날리지 않도록 투명봉지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별표2]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배출요령(제7조의 2 관련)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가. 종이팩	0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압착하여 배출
나. 유리병	0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들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0 농약병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다. 금속캔	0 찰칸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꽂초 등 이물질들을 넣지 말 것
	0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성수지류	0 플라스틱류 - PET(음료수병, 생수병 등), PS(요구르트병, 아이스크림 용기 등), PE(세제용기 등) 등의 용기·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0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완충재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디셔너·오디오·개인용 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 전지류	0 수은전지 신축은 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나. 타이어	0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다. 윤활유	0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마. 형광등	0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장기 내장형(CFL), 콤팩트형(CF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깨지지 않게 주요거점(동주민센터, 아파트 등) 형광등 분리배출 수거함에 배출

[별표3]

2.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구분	2ℓ	3ℓ	5ℓ	10ℓ	120ℓ (공동주택용 납부필증)	kg
종량제 수수료	190원	300원	500원	1,000원	12,000원	130원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종이류 (고지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관련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 고철류	○ 고철(공구, 철사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다. 비닐류	○ 필름류(과자봉지, 라면봉지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날리지 않도록 투명봉지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일회용 비닐봉지	
다.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투명 봉지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기타 의류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라. 전자제품	TV,냉장고,세탁기, 에어컨,인상기,전선탄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전화기, 오디오, 다리미, 선풍기, 청소기, 인버터가전제품 등	- 일반주택: 재활용품 배출일에 문전 배출 - 공동주택: 배출장소 또는 전용 수거함에 배출

※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별표3]

2.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구분	1ℓ	2ℓ	3ℓ	5ℓ	10ℓ	120ℓ (공동주택용 납부필증)	kg
종량제 수수료	100원	190원	300원	500원	1,000원	12,000원	130원